

『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 및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소비둔화 및 경기위축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인상 시기를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,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인상 시기 유예
(안 별표 1, 부칙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코로나-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('20. 4월)때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단위 수수료를 킬로그램당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하고 부피 단위 수수료를 리터당 50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.
-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, 수입 대비 비용처리 과다 지출로 인한 적자해소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격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